『외화 양도성예금증서(통장식)』 특약

제1조 (약관의 적용)

『외화 양도성예금증서(통장식)』 (이하 "이 등록발행 양도성예금증서"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『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』을 적용합니다.

제2조 (예금과목)

이 등록발행 양도성예금증서는 외화정기예금으로 합니다.

제3조 (가입대상)

이 등록발행 양도성예금증서의 가입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.

제4조 (가능통화)

이 등록발행 양도성예금증서의 가입 가능통화는 15개 통화로 USD, EUR, JPY, GBP, CHF, AUD, CAD, NZD, HKD, SGD, SEK, DKK, NOK, KWD, CNY 로 합니다.

제5조 (가입금액)

이 등록발행 양도성예금증서의 가입금액은 USD 5,000 상당금액 이상이며 최고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.

제6조 (가입기간)

이 등록발행 양도성예금증서의 가입기간은 30일 이상 365일 이내로 하며, 일단위로 지정합니다.
단, 공휴일을 만기일로 정할 수 없습니다.

제7조 (적용이율)

이 등록발행 양도성예금증서의 적용이율은 영업점 게시이율을 따르기로 합니다.

제8조 (통장발행)

이 등록발행 양도성예금증서는 기명 통장식으로 발행합니다.

제9조 (만기일 전 지급거절)

이 등록발행 양도성예금증서는 만기일 전에 지급하지 않습니다.

제10조 (만기 후 이자)

예금주가 만기일 이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액면금액에 가입일 당시 적용 이율의 3/10에 해당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.

제11조 (예금자 보호)

이 등록발행 양도성예금증서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습니다.

KEB 하나은행

제12조 (관련법규의 준용)

이 등록발행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채등록법, 외국환거래법
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.

제13조 (약관의 변경)

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6조를 적용(준용)합니다.

2017.8.18 개정
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7-약관-0110호

KEB 하나은행